

#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개관(概觀)

- 특허청을 중심으로 -

최정일\*

## I. 서론

특별사법경찰제도(줄여서“특사경”이라고도 함)의 법적·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이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6년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창설되고 시행되어왔다. 근거 법률로는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동법은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무려 5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유형과 그 직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sup>1)</sup>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 특별사법경찰리는 8급~9급 공무원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 지역 및 시설 분야와 조세, 마약, 상표권 위반, 관세 위반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일반사법경찰제도를 비교하면 양 제도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경우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事項)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2)</sup>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17,613명

\*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법학박사.

1) 신현기(2012).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자치경찰연구, 5(2): 7-15.  
2) 최종술(2014).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9(3): 184

이며 932개의 중앙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사를 비롯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별사법경찰 중에서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특허청의 특사경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의 특성화된 전문성, 직무 범위, 현황, 한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Ⅱ.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의 내용 및 특징

국내의 위조 상품 범람은 국가 브랜드 및 수출경쟁력 제고(提高)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조 상품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조 상품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8일 상표권특별사법경찰(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특허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물론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sup>3)</sup> 이런 점에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특별히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경찰의 업무는 그 특성상 치안 관련 사건에 치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 까지 일반 경찰력이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sup>4)</sup> 또한 일반 경찰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개념 이해에 있어 그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오늘날 증가

-185; 신현기(2012).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1(3): 143-170.

3) 민형동(2007).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38-40.

4) 유용봉(2015). 형사절차법상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14(2): 287-312.

하는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나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특별사법경찰조직이 필요하다.<sup>5)</sup> 상표권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설립 근거 법률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를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규칙으로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이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부 및 3개의 지역사무소<sup>6)</sup>를 두고 있다. 본부에는 4급에 해당하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이, 각 지역(단 특사경 본부는 대전사무소를 겸하고 있음)에는 5급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 소장이 있으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산업재산정책국장의 지휘 하에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사무소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sup>7)</sup>

## 1.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관한 범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5호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은 “제5조 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그 업무 범위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특허

5) 양재열·양현호(2016),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 확장 논의에 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9(3): 56-92.

6)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원도, 경기도 ②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 ③ 부산 사무소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7) 대전 정부청사 안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을 포함한 지원반(5명)이 있고 3개의 지역사무소에는 서울 사무소(9명), 대전 사무소(4명), 부산 사무소(5명)가 있음.

청의 특별사법경찰권한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3)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4)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5) 다음<sup>8)</sup>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6)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sup>9)</sup>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유형

-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2. 위조 물품 및 위조 사범에 대한 처벌

특별사법경찰권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 ① 관할 구역 내 자체 위조 상품 단속계획 수립·시행 ② 관할 구역 내 위조

---

8)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을 말한다.

9)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은 목적.

상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 ③ 기타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의 특사경이 위조물품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획득한 위조물품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 규정)에 따라 압수 또는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오늘날 위조 상품의 범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위조사범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 3. 위조 상품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실제로 위조 상품의 경우, 특허청의 특사경이 모든 위조품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나 일반 시민의 신고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특허청의 특사경은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 상품 제조공장, 유통업자 등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법 위반자에 대한 제보센터(<http://www.patent.go.kr:7078/bp/main/main.do>, TEL: 1666-6464)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보 센터에 접수된 자료들은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의 소중한 첩보 자료로 활용되어 상표권 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나아가 위조 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提高)할 목적으로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조 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행위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사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1) 경찰에 신고한 경우 - 적발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2) 검찰에 신고한 경우 - 적발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의 신고자.
- 3) 포상금 지급금액

적발 금액	포상 금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0만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50만원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200만원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50만원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만원
50억원 이상	400만원

※ 적발 금액은 적발된 위조 상품 정품 가액(수사기관 확인 내용을 기준)을 기준으로 함

#### 4)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2)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4)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7)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 5) 포상금 신청 기한

- (1) 경찰에 신고한 경우 : 경찰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2) 검찰에 신고한 경우 : 검찰이 신고사건을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6) 포상금 신청 기관 및 절차

- (1)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 (2) 신고가 처리된 수사기관의 회신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 소요기간이 상이함.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산업재산조사과)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요청 →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산업재산조사과) →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 Ⅲ. 결론 및 제언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행위는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치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반 경찰력으로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업무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두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하겠다.<sup>10)</sup>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존립이유가 특성화된 '전문성'에 있다면 특허청은 인력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sup>11)</sup> 그동안 특허청은 2011년 사이버 전문가들이 배치된 특사경 ON-LINE 수사반을 출범하여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OFF-LINE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이들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 산업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일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위반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위조 상품 단속체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마련<sup>12)</sup>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對국민홍보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13)</sup> 이를 위해 1. 조직 확충의 측면에서는 특사경을 산업재산정책국 내의 산업재산정책과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과로 승격시키고 3개소에 불과한 지역사무소를 광역별 단위(최소 5개 광역)로 늘릴 필요가 있다. 2. 인원 확충의 측면에서도 특사경의 인

10) 이은주·유영재(2015),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하철 보안관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4(4): 461-482.

11) 김용주(2014),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4(4) 통권 제40호: 78-100.

12) 조동호(2011),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93-126.

13) 정웅석(2014),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3): 242-281.

력을 광역별로 수도권 20명, 도 또는 광역시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위조 사범을 잡기 위해 직원들의 잠복근무, 현장출동이 잦음에도 출장비 및 교통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권 관련 권리침해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이 산업재산권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특사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해당 관청은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은 적극적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도 본질적으로는 위조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4(4) 통권 제40호, 2014.
- 민형동,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2007.
- 신현기,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자치경찰연구, 5(2), 2012.
- \_\_\_\_\_,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1(3), 2012.
- 양재열·양현호,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권 확장 논의에 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9(3), 2016.
- 유용봉, 형사절차법상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14(2), 2015.
- 이은주·유영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하철보안관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4(4), 2015.
- 정웅석,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3), 2014.
- 조동호,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 2011.
- 최종술,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9(3), 2014.

【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개관(概觀)

- 특허청을 중심으로 -

최 정 일\*

우리나라의 경우 1956년에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가 창설되고 시행되어왔다. 근거 법률로는 1956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동법은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무려 50여 차례 이상의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유형과 그 직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지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 지역 및 시설 분야와 조세, 마약, 상표권 위반, 관세 위반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일반사법경찰제도를 비교하면 양 제도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경우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事項)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산업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상표권 관련 권리침해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이 산업재산권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특사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해당 관청은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은 적극적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도 본질

---

\*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법학박사.

적으로는 위조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전문성, 특허, 위조, 수사권, 상표권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Korea  
- with a focus on the Patent Office -

Choi, Jung-il\*

In Korea,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1956. In the meantime, we have continuously expanded the 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and its scope of duty through more than 50 re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ra. In particula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s are implemented in specific areas and facilities such as railways, environments, hygiene, forests, seafarers, resales, tax affairs, and prisons, which are difficult to reach general investigative rights, and areas requiring expertise such as tax, drug, trademark violations and customs violations. Compar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ith the general judicial police system,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power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in the cas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scope of the authority is limited locally. The problem is that the scop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hich is installed to protect industrial property rights, is limited to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esign rights, the regula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not properly implemented, and the design right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pecial envoy's duties despite the fact that the design rights are an axi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cracking down on counterfeit goods of high-end products, but there is a side that has been ignor-

---

\* Professor, Dept. Police & Security Administration, Ph.D. in law.

ing the design rights that have suffered a lot of damage to small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to include the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in the scope of the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n that the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can be seen as a counterfeit product in essence.

Keywords : professionalism, patent, forgery, right of investigation,  
trademark rights

